

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 [] 등록신청서

[] 변경신청서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
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

신청·신고인	상호(명칭)	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		(전화번호:)

사무실 소재지	(전화번호:)
---------	----------

실험실 소재지	(전화번호:)
---------	----------

등록/변경내용

「하수도법」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(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신고인)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(신고인) 제출서류	1.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(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) 1부 2.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.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	수수료 등록: 23,000원 변경: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. 2.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.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1. 신청(신고)을 하여야 하는 대상 :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·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
2. 등록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
 - 가. 상호 변경
 - 나. 기술인력의 변경
 - 다. 대표자의 변경
 - 라.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
 - 마.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(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)

처리절차

